

경력경쟁채용등 예정계급별 경력기준

임용예정계급 직무분야			3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외무공무원			외무 9등급	외무 6~8등급	외무 5등급	외무 4등급	외무 3등급	외무 2등급	외무 1등급
교육공무원 (사립학교 교원 포함)	대학(교육대학·전 문대학 포함)교원		교 수	부교수	조교수				
	초·중·고 등학교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	공무원보수 규정 별표11 적용대상자		24호봉 이 상	16호봉 이 상	12호봉 이 상	11호봉 이 하		
		공무원보수 규정 별표12 적용대상자		17호봉 이 상	11호봉 이 상	7호봉 이 상	6호봉 이 하		
관 사 · 검 사			5호봉 이 상	2호봉 이 상					
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			박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12년 이상	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	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				
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			10년 또는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			6년	3년		

- 비고 1.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및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의 경우에는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다.
2.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의 경우,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미리 정하되, 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(본부장, 부장, 차장, 과장, 팀장 등)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.
3.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 경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산정 시 기능6급은 6급으로, 기능7급은 7급으로, 기능8급은 8급으로, 기능9급은 9급으로 본다.